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 11. 23.(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3. 제안이유

-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의 별표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국민의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현재 용량 기준에 맞게 인하여 청구인의 부담 완화

4. 주요내용

- 정보공개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범위 확대 및 수수료 개선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무료로 하도록 함
 -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하물·복제물 구분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사진 등)”으로 분리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고자 함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청구인의 부담 완화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하여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 공개가 증가 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부과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